



[2026년 8월 1일 제작]

무배당 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2601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ABL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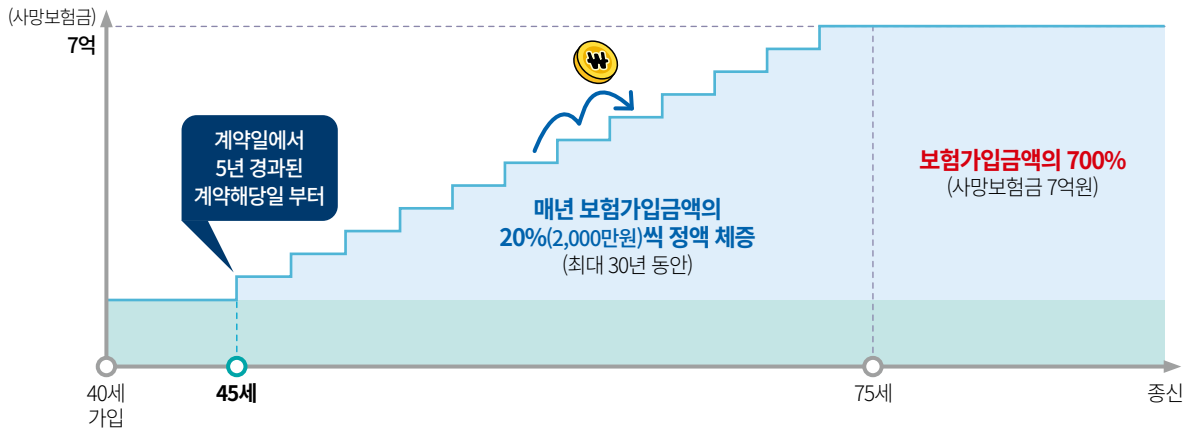
길어지는 우리 삶, 미리 준비하세요!

(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2601

1 체증하는 사망보험금으로 종신토록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일에서 5년 경과된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30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하여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예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증액사망보험금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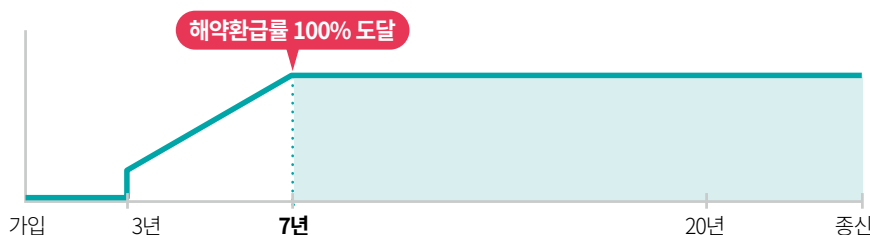


※ 상기 예시는 '사망보험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증액사망보험금'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평준형 종신보험에 비해 일정 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에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일부터 7년 시점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상기 예시는 '해약환급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증액사망보험금'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3 계약일부터 7년 이후 다양한 전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적립형 전환, 금리연동형종신 전환, 연금 전환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 ※ 계약 전환은 각각의 계약 전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계약 전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4 간편심사로 질병이 있어도 가입가능!(다만, 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중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5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가입으로 실속 있게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 (이하 ‘기본형’이라 합니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2601	1종 (간편심사형)	종신	20년납	남자 30세 ~ 59세 여자 30세 ~ 61세
	2종 (일반심사형)			만 15세 ~ 64세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형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보험자 사망시기	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35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30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3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700%
증액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증액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함)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 당시에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 해당 월의 보험료(120회차 또는 240회차)를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유지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유지보너스} = \text{주계약 보험료} \times 12 \times 10 \times \text{유지보너스지급률}$$

사망보험금 증액일	유지보너스지급률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7.0%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6.0%

-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유지보너스 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의 재원인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망보험금 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전립선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장해80%이상보장특약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종신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우리WON 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2601	1종(간편심사형)	1,272,000	1,488,000	1,641,000	1,121,000	1,363,000	1,582,000
	2종(일반심사형)	1,146,000	1,375,000	1,577,000	1,018,000	1,255,000	1,501,000

선택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단,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20년만기 전기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월납, 단위: 원

1종(간편심사형)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장해80%이상보장특약		1,430	1,820	2,280	1,510	1,930	2,470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52,950	142,653	336,717	43,138	100,796	177,963
2종(일반심사형)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장해80%이상보장특약		950	1,200	1,500	880	1,130	1,440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31,730	88,460	217,183	26,900	63,725	113,529

• 피보험자가 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종신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1종(간편심사형)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7,856,000	-	0.0%	16,356,000	-	0.0%
2년	35,712,000	-	0.0%	32,712,000	-	0.0%
3년	53,568,000	10,713,600	20.0%	49,068,000	9,813,600	20.0%
5년	89,280,000	53,568,000	60.0%	81,780,000	49,068,000	60.0%
7년	124,992,000	124,992,000	100.0%	114,492,000	114,492,000	100.0%
10년	178,560,000	191,059,200	107.0%	163,560,000	175,009,200	107.0%
20년	357,120,000	382,532,800	107.1%	327,120,000	350,625,000	107.2%
30년	357,120,000	386,435,200	108.2%	327,120,000	354,976,000	108.5%
40년	357,120,000	389,669,800	109.1%	327,120,000	359,159,500	109.8%

2종(일반심사형)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6,500,000	-	0.0%	15,060,000	-	0.0%
2년	33,000,000	-	0.0%	30,120,000	-	0.0%
3년	49,500,000	9,900,000	20.0%	45,180,000	9,036,000	20.0%
5년	82,500,000	49,500,000	60.0%	75,300,000	45,180,000	60.0%
7년	115,500,000	115,500,000	100.0%	105,420,000	105,420,000	100.0%
10년	165,000,000	176,550,000	107.0%	150,600,000	161,142,000	107.0%
20년	330,000,000	353,623,400	107.2%	301,200,000	322,910,300	107.2%
30년	330,000,000	357,635,200	108.4%	301,200,000	327,127,100	108.6%
40년	330,000,000	361,451,300	109.5%	301,200,000	331,576,400	110.1%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지급됩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해약환급금} = \text{납입보험료 누계금액} \times \text{해약환급률}$$

※ 해약환급률

해약환급률은 경과월수와 보험료 납입횟수가 모두 충족된 구간의 해약환급률을 적용합니다.

경과월수	보험료 납입횟수	해약환급률
계약일 ~ 36개월 미만	-	0%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36회 이상	$\frac{\text{보험료 납입횟수} - 24}{60}$
84개월 이상	84회 이상	100%

라. ‘다’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은 ‘증액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마. ‘라’에서 ‘증액 계약자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유지보너스를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다’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해약환급률의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가 충족된 구간의 해약환급률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사. ‘다’에서 ‘보험료 납입횟수’란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한 횟수(다만, 당월분 이외의 선납보험료 납입횟수는 제외)를 말하며, ‘납입보험료 누계금액’이란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합계액(다만, 당월분 이외의 선납보험료 제외)을 말합니다.

아.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다’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자.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차.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액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나. ‘가’의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 해당 월의 보험료(120회차 또는 240회차)를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가’의 ‘증액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유지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유지보너스} = \text{주계약 보험료} \times 12 \times 10 \times \text{유지보너스지급률}$$

사망보험금 증액일	유지보너스지급률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7.0%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6.0%

라.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마.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바.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사. ‘유지보너스 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의 재원인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망보험금 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 나. 당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2026년 기준 연복리 2.50%)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간편심사에 관한 사항

- 1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 나.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은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다. 회사는 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합니다.
- 라.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라’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 바.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 사.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무)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3대질병연금전환특약 및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 나.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다. 다만, (무)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무)3대질병연금전환특약 및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나’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라. (무)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및 (무)3대질병연금전환특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일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
 - ②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 또는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③ 전환시점 전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④ 주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 마.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 및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① 계약일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
- ② “연금전환특약” 또는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③ 전환 후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인 계약
- ④ 주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나. 계약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을 신청 할 때,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를 이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포함) 중 1명으로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시점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포함)로 합니다.

다.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 후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라.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은 이 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마.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은 전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 계약의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

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와 동일한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이 계약의 심사형태와 다른 심사형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사. ‘나’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하여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의 일반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아. ‘나’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이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자. ‘나’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차.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을 신청한 계약자는 계약이 전환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 후 연금전환특약 및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① 계약일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
- ② 연금전환특약 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 ③ 전환 후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인 계약
- ④ 전환시점 전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⑤ 주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나. (무)적립형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다.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 및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무)추가납입특약에 관한 사항

- 가.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는 이 특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나.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관리비용 : 추가납입보험료의 2.0%
- 다만,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은 부가하지 않습니다.
- 다. 추가납입특약보험료에 대해 연복리 2.50% 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2.50% 확정이율은 추가납입특약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추가납입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 라.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합니다.
 - '바'에서 정하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마.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말합니다.
- 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납입한도
-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의 납입한도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이내로 하며,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주계약 월납 보험료 × 12 × 200%)로 합니다.
- 사.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다만,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이하 "생활설계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에 따라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하며, 생활설계자금 신청내역 및 보험금 변경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다. '가'의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1회 지급하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활설계자금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생활설계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① 정액 지급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정액의 생활설계자금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
 - ② 정액 감액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2)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의 신청일을 포함하여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생활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생활설계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마.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의 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생활설계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의 경우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 부분은 자동감액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나.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라.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 상품별 유의사항 안내

- 가.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평준형 종신보험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에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기본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에 관한 사항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 중인 경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은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과 동일 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

- (1)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용하며,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이하 '유동화'라 합니다) 신청일에 주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동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② 유동화 신청시점에 주계약 사망보험금(기타유지보너스, 증액 보험금, 체증형 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시점에 보험사고 발생하였다면 지급되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기준)이 9억원 이하인 계약
 -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④ 신청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 ⑤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 (2) 계약자는 제1회 유동화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동화 금액을 회사에 환입하고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 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계약 약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나.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 (1)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중 언제든지 유동화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유동화를 중지하고, 유동화 중지 신청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유동화 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유동화 금액을 지급하던 중 계약자가 유동화 중지를 신청하여 유동화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주계약에서 정하는 예정이율 또는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계약자는 유동화 중지 신청일 또는 종료 이후 유동화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를 준용합니다.

다.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유동화를 재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유동화 대상금액과 최소 2년부터 최대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종국연령까지의 잔여기간" 이내에서 유동화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1)'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유동화 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3) 유동화 재신청을 하면서 '(1)'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재신청 유동화 금액 총액'은 유동화 재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을 유동화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하여 이 특약의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5)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되어 유동화된 부분은 매월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주계약에서 정하는 예정이율 또는 적용이율로 부리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년(다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월, 일(다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일'로 하며,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라.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 (1) 유동화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2)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계약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되는 제도 및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유동화 지급이 완료되거나 유동화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3)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장래 유동화 종료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특약의 소멸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화도 종료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유동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 유동화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던 중 특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주계약에서 정하는 예정이율 또는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 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단점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단위:만원

구분	경과년수 /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
해약환급금(율)	1년	314	0(0.0%)	188(59.6%)
	5년	1,572	1,072(68.1%)	1,445(91.9%)
	10년	3,144	2,470(78.5%)	3,178(101.0%)
	15년	4,716	3,938(83.5%)	5,190(110.0%)
	20년	6,288	5,586(88.8%)	7,742(123.1%)
사망보험금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연금연액	20년	6,288	263	344

주)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 · 산출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불만족 접수 안내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 및 불만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

- 콜센터(일반상담 1588-6500, 사고보험금 1588-4404)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여의도동, ABL타워) 17층 소비자보호팀 (우)07332

- 팩스: 02-3787-8719 • e-mail: customer@abllife.co.kr

또한, 생명보험협회(02-2262-6600, www.klia.or.kr)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을 통해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